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조항의 정합성 제고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신청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규정
나.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변경(안 제4조제8호)

1)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 변경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개선(안 제1호의2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및 유의사항 내용 정비
라.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3서식)

1)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개선 및 서명란 위치 변경
마.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안 제1호의4서식)

1) 서식정보를 서식 설계 기준에 맞춰 법령명 추가
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5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전자적 신청)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정부24”를 말한다.

제4조제8호 중 “영 제12조의12제2항”을 “영 제12조의1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 제1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호 및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1)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의 사항에 추가

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개선(안
제1호의8서식 개정)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작성 양식 추가

아. 기피신청서(안 제1호의9서식)

1)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 변경

자. 기타 개선 사항(안 제1호의5 서식, 제1호의6 서식, 제1호의8 서식 개정)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준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변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변경신청 처리상황 SMS 수신: []동의함, []동의안함	
	신청인의 지인의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사유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변경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일부)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실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정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4. 변경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0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1에 따른 사실조사 관련 자료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2. 국제·지방세 납세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사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읍·면·동·출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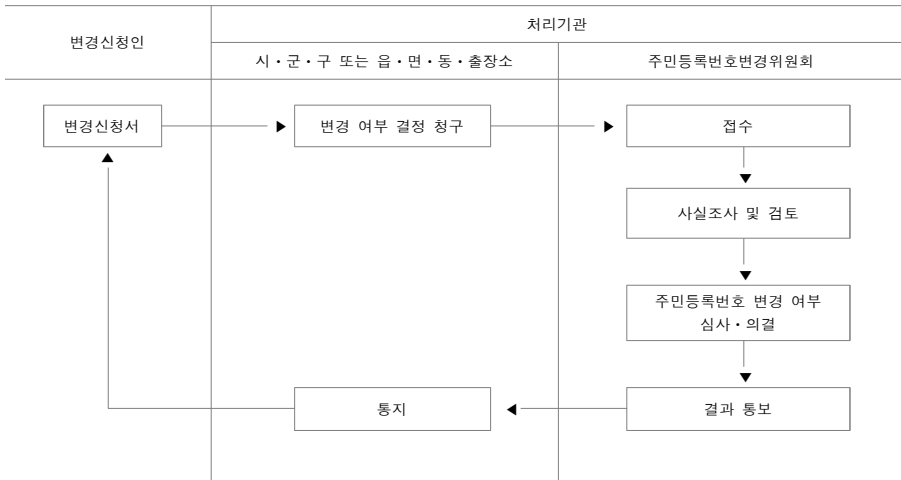
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관한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통해 노출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과는 별개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제한 및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국제·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출입국 자료 및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융회사 등에게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변경신청 이후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변경된 사실을 변경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임
대리인 [] 변경 통지서
[] 해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변경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예정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선임·변경·해임)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변경신청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변경
주민등록번호 [] 이의 신청 취하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은 즉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하 사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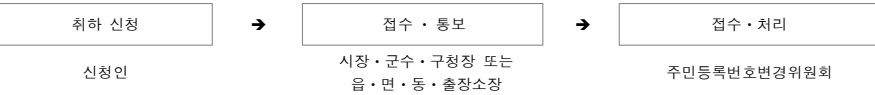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붙임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또는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 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에게 통지 시 미기재		

※ 유의사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호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성명		
등록기준지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부여 당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번호	
	변경 후 번호	
변경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같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통지 후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 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붙임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통보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통보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성명	통지 기관	주민등록번호 변경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지일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성명	통지 기관	결과 통지일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건번호			
신청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소명 방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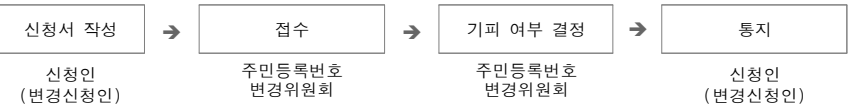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7. (생략)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9서식	제2조의3(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전자적 신청)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정부24”를 말한다.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12조의13제2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6632